

보 건 복 지 부

시 정 요 구

제 목 긴급의료지원 비급여 진료비 심사청구 소홀

기 관 명 중구, 서구, 동구, 영도구, 동래구, 북구, 금정구, 강서구, 연제구,
수영구, 사상구, 기장군

내 용

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의료지원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(또는 피부양자)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8조, 「의료급여법」 제11조의3에 따라 본인일부 부담금 외에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용(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진료비)이 요양(의료)급여의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급여비용심사기관(건강보험심사평가원)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
보건복지부지침 「긴급지원사업 안내」의 규정에 따르면 2013. 2. 1.이후 긴급의료지원금액 중 비급여진료비의 지원금액이 150만 원 이상인 건에 대하여 보장기관(시·군·구청장)이 긴급의료지원 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필요서류를 갖추어 요양기관에서 지불한 비용(비급여 등)이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진료비용 외의 본인부담금의 과다 징수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.

그런데 부산광역시 중구 등 12개 구에서는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중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급여진료비 지원금액 150만 원 이상인 692건(지원기간: 2014. 1. 1. ~ 2017. 1. 25.)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의 적정 청구 여부에 대하여 심사 요청을 소홀히 하였다.

조치할 사항 중구청장, 서구청장, 동구청장, 영도구청장, 동래구청장, 북구청장, 금정구청장, 강서구청장, 연제구청장, 수영구청장, 사상구청장, 기장군수는

[시정]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 150만 원 이상인 건에 대하여 과다징수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 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